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

(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2019.12



(사)한국선급

2020.01.01.일자 시행사항

(1) 검사신청일 기준

● IACS UR Z1(Rev. 7, May 2019) 개정사항 반영

- 연차검사시 압축 수소 또는 천연가스를 저주용 연료탱크에 보유한 차량을 화물로서 운송하는 차량운반선에 대한 화재안전장치 검사요건 추가
- 유조선의 불활성가스장치 검사요건 최신화
-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중간검사시 드라이 케미컬 분말 소화장치의 분배관에 대한 검사요건 추가

● IACS UR Z7 (Rev. 27, Oct 2018) 개정사항 반영

- 일반선박 및 기타선박의 3차 이후의 정기검사시 두께계측 최소범위 중 선수 및 선미피크 탱크의 내부재 검사에서 선수 및 선미피크 평형수탱크의 내부재검사로 요건 개정

● IACS UR Z7/Z7.1/Z7.2/Z10.1/Z10.2/Z10.3/Z10.4/Z10.5(Rev. 28/15/8/24/36/19/16/19 May or Jun 2019) 및 PR1A/1B/1C/20/35(Rev 7/4/6/3/1, Apr or May 2019)의 개정사항 반영

- 기존에 “지적사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선급유지조건”을 삭제함

- 내부고객(여수지부)의 개정요청서 반영
 - 정기검사시 구역의 내부검사시 검사해야하는 구역을 명확히 함
- 그 외 규칙적용시 발견된 불합리한 요건에 등에 대한 개정
 - 선급부호 중 특기사항을 특기사항 및 추가특기사항으로 구분함

(2) (건조계약일 또는 고조파필터 개조 후의 검사신청일 기준)

- IACS UR E24(Rev.1 Dec 2018) 개정사항 반영
 - 고조파필터를 포함하는 선내 배전시스템에 대한 고조파외곡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요건을 개정함.

(1) 2020.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현 행 | 개 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부터 103. <생략></p> <p>104. 동등효력 [지침 참조] <u>이 규칙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u></p> <p>105. 신기술 [지침 참조] <u>우리 선급은 이 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설계원칙 또는 특징에 기초하거나 이를 적용한 선박에 대하여 실험, 계산 또는 기타 우리 선급에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 제 6 절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부터 103. <생략></p> <p>104. 동등효력 (2020) [지침 참조] <u>이 규칙에 만족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대체설계 및 신기술이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u></p> <p>105. 신기술 [지침 참조] <u>우리 선급은 이 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설계원칙 또는 특징에 기초하거나 이를 적용한 선박에 대하여 실험, 계산 또는 기타 우리 선급에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 제 6 절 <현행과 동일></p> |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절 선박소유자의 협력의무</p> <p>〈새롭게 신설〉</p> <p>701. 보고사항 선급에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u>지체 없이</u> 우리 선급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급유지에 영향을 주는 해난사고 〈새롭게 추가〉 (2) 선박의 입거 또는 상가 (3) 선박의 계선 또는 해체 (4) 선박의 소유자 변경 (5) 탈급 (6) 기타 선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p>702. ~ 703. 〈생략〉</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절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협력의무</p> <p>701. 일반 (20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된 선박이 환경, 적재, 운항 및 그 외 선급규칙을 기본으로 한 요건에 따라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춘 선원 또는 운항관리자에 의해 적합하게 선적, 운항 및 유지되고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2. 등록된 선박에 적용되는 모든 협약증서의 유효성의 보장을 포함하여 국제만재흡수선협약,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기타 관련 협약 등이나 그 외 정부의 관련 제 규정이 준수되는 적절한 상태로 항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선급증서의 유효성 보장을 포함하여 선급규칙에 요구되는 차기 검사시까지 등록된 선박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p>702. 보고사항 (2020) 선급에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선급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급유지에 영향을 주는 해난사고 (2) 2장 107. 2항에서 언급하는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에 해당되는 부위가 발견되는 경우 (최모 허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수밀 또는 풍우밀의 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체구조 손상이 식별된 경우 (4) 선박의 입거 또는 상가 (5) 선박의 계선 또는 해체 (6) 선박의 소유자 변경 (7) 탈급 (8) 기타 선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p>703. ~ 704. (2020) 〈현행과 동일〉</p> <p>〈이하 현행과 동일〉</p> |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p> <p>901. 선급정지 및 회복</p> <p>1. <생략></p> <p>2. 다음의 경우 우리 선급의 선급정지절차에 따라 선급이 정지될 수 있다.</p> <p>(1)~(5) <생략></p> <p>(6) 연차검사 시 지정된 또는 기한이 지난 계속검사항목이 검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에 의하여 연기되지 아니한 경우</p> <p><새롭게 추가></p> <p>(7)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p> <p>선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가 만족하게 조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우리 선급이 결정한 선급정지는 선급정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부터 발효되며 지정된 항목 및/또는 검사가 조치되어 선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유효하다.</p> <p><생략></p> <p>7. 계선 중인 선박이 기한을 지난 정기적 검사가 있는 상태에서 계선위치로부터 <u>수리/검사장소까지</u> 항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에 대한 선급정지는 보류될 수 있고, 우리 선급이 기한이 지난 검사 및 계선기간을 고려한 범위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조건으로, 계선위치로부터 <u>수리/검사장소까지</u> 단일직항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도하는 항해에 대한 조건이 명시된 단기선급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요건은 계선되기 전에 이미 선급이 정지된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다.</p> <p>8. 선택적 부기부호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기부호에 한해서만 정지 또는 철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급은 계속 유지된다. (2018)</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p> <p>901. 선급정지 및 회복</p> <p>1. <현행과 동일></p> <p>2. 다음의 경우 우리 선급의 선급정지절차에 따라 선급이 정지될 수 있다.</p> <p>(1)~(5) <현행과 동일></p> <p>(6) 연차검사 시 지정된 또는 기한이 지난 계속검사항목이 검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에 의하여 연기되지 아니한 경우</p> <p>(7) 1장, 702.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협력의무 중 “<u>보고사항</u>”에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우리 선급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p> <p>(8)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p> <p>선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가 만족하게 조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우리 선급이 결정한 선급정지는 선급정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부터 발효되며 지정된 항목 및/또는 검사가 조치되어 선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유효하다.</p> <p><현행과 동일></p> <p>7. 계선 중인 선박이 기한을 지난 정기적 검사가 있는 상태에서 계선위치로부터 수리/검사/또 다른 계선 장소까지 항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에 대한 선급정지는 보류될 수 있고, 우리 선급이 기한이 지난 검사 및 계선기간을 고려한 범위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조건으로, 계선위치로부터 <u>수리/검사/또 다른 계선 장소까지</u> 단일직항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도하는 항해에 대한 조건이 명시된 단기선급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요건은 계선되기 전에 이미 선급이 정지된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다. (2020)</p> <p>8. 선택적 부기부호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기부호에 한해서만 정지 또는 철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급은 계속 유지된다. (2018)</p> <p><이하 현행과 동일></p> |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용어의 정의</p> <p>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15. <생략></p> <p>16. 도장상태(coating condition)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p> <p>(1) 양호(good) : 점식(spot rusting)이 없거나 작은 점식만 있는 상태</p> <p>(2) 보통(fair) : 휨보강재의 가장자리와 용접 결합부에 대하여 국부적인 도막의 탈락이 있거나 또는 고려하는 부위 중 20% 이상에 대하여 가벼운 부식(light rusting)이 있는 상태로 불량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한 상태</p> <p>(3) 불량(poor) : 고려하는 부위 중 20% 이상에 대하여 도막의 탈락이 있거나 10% 이상에 심한 부식(hard scale)이 있는 상태</p> <p><새롭게 추가></p> <p><생략></p> <p>113. 검사준비 (2019)</p> <p>1. ~ 3. <생략></p> <p>4. 해상 부양상태에서의 검사</p> <p>(1) ~ (3) <생략></p> <p>(4) 보트 또는 뗏목을 이용한 탱크검사는 일기예보와 예상되는 해상상태에 따른 선체운동을 감안하고 안전장비 등을 고려하여 검사원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침 참조】</p> <p><새롭게 추가></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용어의 정의</p> <p>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15. <현행과 동일></p> <p>16. 도장상태(coating condition)¹⁾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2020)</p> <p>(1) 양호(good) : 점식(spot rusting)이 없거나 작은 점식만 있는 상태</p> <p>(2) 보통(fair) : 휨보강재의 가장자리와 용접 결합부에 대하여 국부적인 도막의 탈락이 있거나 또는 고려하는 부위 중 20% 이상에 대하여 가벼운 부식(light rusting)이 있는 상태로 불량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한 상태</p> <p>(3) 불량(poor) : 고려하는 부위 중 20% 이상에 대하여 도막의 탈락이 있거나 10% 이상에 심한 부식(hard scale)이 있는 상태</p> <p>(비고) ¹⁾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 87 (Guidelines for Coating Maintenance & Repairs for Ballast Tanks and Combined Cargo/Ballast Tanks on Oil Tanker) 참조. (2020)</p> <p><현행과 동일></p> <p>113. 검사준비 (2019)</p> <p>1. ~ 3. <현행과 동일></p> <p>4. 해상 부양상태에서의 검사¹⁾ (2020)</p> <p>(1) ~ (3) <현행과 동일></p> <p>(4) 보트 또는 뗏목을 이용한 탱크검사는 일기예보와 예상되는 해상상태에 따른 선체운동을 감안하고 안전장비 등을 고려하여 검사원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침 참조】</p> <p>(비고) ¹⁾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 39 (Safe Use of Rafts or Boats for Survey) 참조. (2020)</p> <p><이하 현행과 동일></p> |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연차검사</p> <p>201. 검사시기 <생략></p> <p>2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1. 검사는 선체, 창구덮개, 창구코밍, 폐쇄장치, 의장 및 관련 배관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한다.</p> <p>(1) ~ (29) <생략></p> <p>(30) 화물구역, 차량구역, 로로구역에서 방화구조를 검사 하고, <u>실행 가능하고 적합한 경우 여러 개구를 폐쇄하는 제어수단의 작동을 확인한다. (2017)</u></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연차검사</p> <p>201. 검사시기 <현행과 동일></p> <p>2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1. 검사는 선체, 창구덮개, 창구코밍, 폐쇄장치, 의장 및 관련 배관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한다.</p> <p>(1) ~ (29) <현행과 동일></p> <p>(30) 화물구역, 차량구역, 로로구역에서 방화구조를 검사 하고, <u>압축 수소 또는 천연가스를 자주용 연료탱크에 보유한 차량을 화물로서 운송하는 차량운반선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장치를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실행 가능하고 적합한 경우 여러 개구를 폐쇄하는 제어수단의 작동을 확인한다. (2020)</u></p> <p><이하 현행과 동일></p> |

| 현행 | 개정 |
|---|---|
| <p>204. 선종별 추가요건 [지침 참조]</p> <p>1. 유조선(탱커 포함) : <내용 생략> (1) <생략> (2) 불활성가스장치 검사 특히, (가)부터 (다) <생략> <u>(라) 데크 씰(deck seal) 또는 이중차단 배출장치, 및 역류방지밸브의 외관을 검사한다. 또한, 데크 씰의 자동공급 및 배출을 점검 또는 이중차단 배출밸브의 작동을 점검하고, 역류방지밸브의 작동을 점검한다. (2019)</u></p> <p>(마)부터 (아) <생략></p> | <p>204. 선종별 추가요건 [지침 참조]</p> <p>1. 유조선(탱커 포함) : <내용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불활성가스장치 검사 특히, (가)부터 (다) <현행과 동일> <u>(라) 역류방지장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검사한다. (2020)</u> <u>(a)데크 씰(deck seal) 및 역류방지밸브의 외관을 검사한다. 또한, 데크 씰의 자동공급 및 배출을 점검하고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점검한다.</u> <u>(b) 이중차단 배출밸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중차단 배출밸브 및 역류방지밸브의 외관을 검사한다. 또한, 동력상실 시 자동작동을 포함한 이중차단 배출밸브의 작동을 점검하고, 역류방지밸브의 작동을 점검한다.</u> <u>(c) 역류방지장치로서 직렬로 된 2개의 차단 밸브 및 그 중간에 벤트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벤트밸브의 자동작동 및 밸브의 오작동에 대한 경보를 점검한다.</u> (마)부터 (아) <현행과 동일> <u>(자) 불활성가스주관으로부터 불활성화 되지 않는 화물탱크를 분리하는 수단을 점검한다. (2020)</u> <u>(차) 불활성 가스장치가 설치된 구역 내에 위치한 2개의 산소검지기의 경보 기능을 점검한다. (2020)</u></p> |

| 현행 | 개정 |
|--|---|
| <p>2. 케미컬탱커 :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현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력시험 및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1) 부터 (18) <생략> (19) 실행가능한 한 과부압 방지를 위한 압력/부압 밸브 및 2차수단과 프레임스크린을 포함하여 화물탱크 벤트장치를 검사한다.</p> <p>(20)부터 (44) <생략></p> <p>3.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 추가로 화물적재 또는 배출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현상을 검사한다. 화물탱크 및 불활성 화물창 구역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검사할 필요 없다. 다만,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력시험 및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1) ~ (10) <생략> (11) 손상시 생존 요건에 대한 특별한 배치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새롭게 추가></p> <p>(12) 화물지역에 있는 선교문과 창문, 선루와 갑판실의 현장과 창문이 만족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13) 화물펌프실과 화물압축기실을 검사한다. (14) ~ (53) <생략></p> <p><이하 생략></p> | <p>2. 케미컬탱커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현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력시험 및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1) 부터 (18) <현행과 동일> (19) 실행가능한 한 과부압 방지를 위한 압력/부압 밸브 및 2차수단과 프레임스크린을 포함하여 화물탱크 벤트장치를 검사한다. 또한 적용되는 경우, 불활성가스로 화물탱크를 퍼징하는 장치를 검사한다. (2020) (20)부터 (44) <현행과 동일></p> <p>3.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 추가로 화물적재 또는 배출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현상을 검사한다. 화물탱크 및 불활성 화물창 구역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검사할 필요 없다. 다만,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력시험 및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1) ~ (10) <현행과 동일> (11) 손상시 생존 요건에 대한 특별한 배치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12) 화물지역의 분리에 대하여 대체설계 및 배치가 적용된 경우, 관련 승인문서에 명시된 시험, 검사 및 정비요건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검사한다. (2020)</p> <p>(13) 화물지역에 있는 선교문과 창문, 선루와 갑판실의 현장과 창문이 만족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2020) (14) 탈출로를 포함하여 화물기기구역 및 터렛구획을 검사한다. (2020) (15) ~ (54) (2020) <현행과 동일></p> <p><이하 현행과 동일></p> |

| 현행 | 개정 |
|---|---|
| 제 3 절 중간검사 | 제 3 절 중간검사 |
| <p>301.~ 303. <생략></p> <p>304. 선종별 추가요건</p> <p>연차검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검사를 하여야 한다.</p> <p>1. 유조선(탱커 포함) :</p> <p>다음과 같이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p> <p>(1) 다양한 배관장치의 검사 시 그 상태에서 의심이 생기면 압력시험 및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중판 용접과 같은 수리에 대하여 특히 유의한다.</p> <p>(2) 선령 10년이 넘는 경우 선택한 화물구역의 내부검사</p> <p>(3) 위험구역(화물펌프실 및 화물탱크의 인접지역 등)에 있는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시험. 다만, 적절한 시험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최근 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p> <p><생략></p> <p>3.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p> <p>추가로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프리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통상 화물적재 또는 배출시 할 수 없는 시험범위이어야 한다. 또한 화물취급설비 및 정확한 성능을 위해 자동제어, 경보,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p> <p>(1) 적용가능한 경우 배관 및 독립형탱크는 선체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었는지 확인한다.</p> <p>(2) 일반적으로 위험구역(화물펌프실 및 화물탱크의 인접지역 등)에서 설비, 시설, 전선의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 전기설비와 케이블을 검사하고 회로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이때 적절한 시험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최근 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p> <p><새롭게 추가></p> <p>(3) 해당되는 경우 강구조물의 가열장치가 만족한지 확인한다.</p> <p>(4) ~ (9) <생략></p> <p><이하 생략></p> | <p>301.~ 303. <현행과 동일></p> <p>304. 선종별 추가요건</p> <p>연차검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검사를 하여야 한다.</p> <p>1. 유조선(탱커 포함) :</p> <p>다음과 같이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p> <p>(1) 다양한 배관장치의 검사 시 그 상태에서 의심이 생기면 압력시험 및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중판 용접과 같은 수리에 대하여 특히 유의한다.</p> <p>(2) 위험구역(화물펌프실 및 화물탱크의 인접지역 등)에 있는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시험. 다만, 적절한 시험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최근 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 (2020)</p> <p><현행과 동일></p> <p>3.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p> <p>추가로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프리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통상 화물적재 또는 배출시 할 수 없는 시험범위이어야 한다. 또한 화물취급설비 및 정확한 성능을 위해 자동제어, 경보,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p> <p>(1) 적용가능한 경우 배관 및 독립형탱크는 선체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었는지 확인한다.</p> <p>(2) 일반적으로 위험구역(화물기기구역 및 화물탱크의 인접지역 등)에서 설비, 시설, 전선의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 전기설비와 케이블을 검사하고 회로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이때 적절한 시험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최근 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p> <p>(3) 드라이 케미컬 분말 소화장치의 분배관은 건조공기로 통기시험(air blow test)을 하여야 한다. (2020)</p> <p>(4) 해당되는 경우 강구조물의 가열장치가 만족한지 확인한다. (2020)</p> <p>(5) ~ (10) (2020) <현행과 동일></p> <p><이하 현행과 동일></p> |

현 행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1. ~ 402. <생략>

403. 검사사항

(7) 탱크 및 구역의 내부검사

- (가) 표 1.2.3에서 정하는 탱크 및 구역을 포함한 모든 구역에 대하여 내부검사를 한다.
- (나) 탱크 내부검사 시에는 판 및 늑골, 빌지웰, 측심관, 통풍관, 흡입 및 배출장치도 검사한다.

<생략>

표 1.2.3 정기검사 시 탱크 및 구역의 내부검사 최소범위 (2017)

| 정기검사 구분 탱크 또는 구역 | | 제1차 정기검사 | 제2차 정기검사 | 제3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
|---|-------------------------|-------------|-------------|-------------|------------------|
| 화물창(이중갑판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화물탱크 | | ○ | ○ | ○ | ○ |
| <생략> | | | | | |
| 연료유탱크 △ | 기관실 | <생략> | | | |
| | 화물지역 | | | | |
| | 기관실 및 화물지역 외(설치된 경우) | | | | |
| 유탄유탱크 △ | | - | - | - | 1개 |
| 청수탱크 △ | | - | 1개 | ○ | ○ |
| (비고) 1. 적용은 탱크의 용도에 의한 분류를 우선으로 한다. ○ : 모든 탱크 및 구역에 대하여 내부검사를 시행한다. △ : 다음에 따른다. 1) 이 요건은 (구조적)일체형탱크에 적용한다. 2)~4) <생략> <새롭게 신설> 2. <생략> <이하 생략> | | | | | |

개 정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1. ~ 402. <현행과 동일>

403. 검사사항

(7) 구역의 내부검사

- (가) 표 1.2.3에서 정하는 선체 및 선루내의 모든 구역에 대하여 내부검사를 한다. (2020)
- (나) 탱크 내부검사 시에는 판 및 늑골, 빌지웰, 측심관, 통풍관, 흡입 및 배출장치도 검사한다.

<현행과 동일>

표 1.2.3 정기검사 시 탱크 및 구역의 내부검사 최소범위 (2020)

| 정기검사 구분 구역 | | 제1차 정기검사 | 제2차 정기검사 | 제3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
|---|--|-------------|-------------|-------------|---------------------|
| <현행과 동일> | | | | | |
| (비고) 1. 적용은 탱크의 용도에 의한 분류를 우선으로 한다. ○ : 모든 구역에 대하여 내부검사를 시행한다. △ : 다음에 따른다. 1) 이 요건은 (구조적)일체형탱크에 적용한다. 2)~4) <현행과 동일> 2.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의 경우는 502.의 2항 (9)호 (다)에 따라 검사한다. (2020) 3. <현행과 동일> (2020) <이하 현행과 동일> | | | | | |

현 행

표 1.2.4 정기검사 시 두께계측 최소범위

1. 일반선박

| 제1차 정기검사 | 제2차 정기검사 | 제3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
|-------------------|---|---|--|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2. 중앙부 0.5L 내의 화물구역에 있어서 1개의 횡단면에 대한 갑판의 각 판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2. 중앙부 0.5L 내의 화물구역에 있어서 2개의 횡단면(서로 다른 화물구역에서 1개씩 취한다) ^{4), 5), 6), 7)} 3. 모든 화물창의 창구덮개 및 코밍(판 및 보강재) ⁹⁾ 4. <u>선수 및 선미피크탱크</u> 내부재 5.~6. <생략>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2. 중앙부 0.5L 내의 화물구역에 있어서 최소한 3개의 횡단면 ^{5), 6), 7)} 3. 모든 화물창의 창구덮개 및 코밍(판 및 보강재) ⁹⁾ 4. <u>선수 및 선미피크탱크</u> 내부재 5.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노출된 상갑판의 각 판 6. ~ 12. <생략> |

(비고)
1)~9) <생략>

개 정

표 1.2.4 정기검사 시 두께계측 최소범위

1. 일반선박

| 제1차 및 제2차 정기검사 | 제3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
|----------------|--|---|
| <현행과 동일>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2. 중앙부 0.5L 내의 화물구역에 있어서 2개의 횡단면(서로 다른 화물구역에서 1개씩 취한다) ^{4), 5), 6), 7)} 3. 모든 화물창의 창구덮개 및 코밍(판 및 보강재) ⁹⁾ 4. <u>선수 및 선미피크 평형수탱크</u> 내부재 <u>(2020)</u> 5.~6. <현행과 동일>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2. 중앙부 0.5L 내의 화물구역에 있어서 최소한 3개의 횡단면 ^{5), 6), 7)} 3. 모든 화물창의 창구덮개 및 코밍(판 및 보강재) ⁹⁾ 4. <u>선수 및 선미피크 평형수탱크</u> 내부재 <u>(2020)</u> 5.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노출된 상갑판의 각 판 6. ~ 12. <현행과 동일> |

(비고)
1)~9) <현행과 동일>

현 행

표 1.2.4 정기검사 시 두께계측 최소범위 (계속)
2. 기타선박

| 제1차 정기검사 | 제2차 정기검사 | 제3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
|----------------------|---|---|---|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2. 중앙부 0.5L 내의 1개의 횡단면에서, 노출된 상갑판 ⁵⁾ , 선측외판 및 선저외판의 각 판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2. 중앙부 0.5L 내의 2개의 횡단면에서, 노출된 상갑판 ⁵⁾ , 선측외판 및 선저외판의 각 판 3. <u>선수 및 선미피크 탱크 내부재</u>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2. 중앙부 0.5L 내의 2개의 횡단면에서 선측외판의 각 판 3.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하여, 1) 노출된 상갑판의 각 판 ⁵⁾ 2) 대표적인 노출된 선루갑판(선미루, 선교루 및 선수루)의 각 판 3) 평형수흡수선과 만재흡수선 사이의 선택된 선측외판에 대하여 각 현마다 1조의 각 판 4) 선저외판 5) 평판용골 4. <u>선수 및 선미피크탱크 내부재</u> |
| (비고) 1) ~ 5) <생략> | | | |

개 정

표 1.2.4 정기검사 시 두께계측 최소범위 (계속)
2. 기타선박

| 제1차 및 제2차 정기검사 | 제3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
|--------------------------|---|---|
| <현행과 동일>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2. 중앙부 0.5L 내의 2개의 횡단면에서, 노출된 상갑판 ⁵⁾ , 선측외판 및 선저외판의 각 판 3. <u>선수 및 선미피크 평형수탱크 내부재 (2020)</u> | 1. 선박 전체에 걸친 의심지역 2. 중앙부 0.5L 내의 2개의 횡단면에서 선측외판의 각 판 3.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하여, 1) 노출된 상갑판의 각 판 ⁵⁾ 2) 대표적인 노출된 선루갑판(선미루, 선교루 및 선수루)의 각 판 3) 평형수흡수선과 만재흡수선 사이의 선택된 선측외판에 대하여 각 현마다 1조의 각 판 4) 선저외판 5) 평판용골 4. <u>선수 및 선미피크평형수탱크 내부재 (2020)</u> |
| (비고) 1) ~ 5) <현행과 동일> | | |

현 행

표 1.2.6 정기검사 시 탱크 압력시험 범위

| 탱크 | 정기검사 구분 | 제1차 정기검사 | 제2차 정기검사 | 제3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
|--|---------|-------------|-------------|-------------|---------------------|
| 모든 물탱크(평형수 겸용 화물창 포함 및 청수탱크 제외) 및 모든 화물탱크 (2018) | | ○ | ○ | ○ | ○ |
|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청수탱크 | | △ | △ | △ | △ |

(비고)

1. 적용은 탱크의 용도에 의한 분류를 우선으로 한다.
2. 탱크의 주위 벽은 공기관상단 또는 평형수겸용 화물창인 경우 창구상단 근처까지의 수두로 시험하여야 한다.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및 청수탱크의 주위 벽은 사용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액면의 수두로 시험하여야 한다.
3. ○ : 모든 탱크의 주위 벽에 대하여 압력시험을 시행한다.
 △ :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및 청수탱크의 압력시험은 탱크경계에 대한 외부검사가 만족스럽고, 선장으로부터 압력시험이 규정에 따라 만족한 결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4. 화물탱크(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화물탱크 제외)의 경우 내부 및 외부 검사를 하고 검사원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5.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탱크 압력시험을 확대할 수 있다.

【지침 참조】

개 정

표 1.2.6 정기검사 시 탱크 압력시험 범위

| 탱크 | 정기검사 구분 | 제1차 정기검사 | 제2차 정기검사 | 제3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
|--|---------|-------------|-------------|-------------|---------------------|
| 모든 물탱크(평형수 겸용 화물창 포함 및 청수탱크 제외) 및 모든 화물탱크 (2018) | | ○ | ○ | ○ | ○ |
|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청수탱크 | | △ | △ | △ | △ |

(비고)

1. 적용은 탱크의 용도에 의한 분류를 우선으로 한다.
2. 탱크의 주위 벽은 공기관상단 또는 평형수겸용 화물창인 경우 창구상단 근처까지의 수두로 시험하여야 한다.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및 청수탱크의 주위 벽은 사용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액면의 수두로 시험하여야 한다.
3. ○ : 모든 탱크의 주위 벽에 대하여 압력시험을 시행한다.
 △ : (2020)
 1) 이 요건은 일체형 탱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료유탱크, 윤활유탱크 및 청수탱크의 압력시험은 탱크경계에 대한 외부검사가 만족스럽고, 선장으로부터 압력시험이 규정에 따라 만족한 결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3)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502.의 2항 (9)호 (다)에 따라 검사한다.
4. 화물탱크(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화물탱크 제외)의 경우 내부 및 외부 검사를 하고 검사원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5.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탱크 압력시험을 확대할 수 있다.

【지침 참조】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적용</p> <p>1. <생략></p> <p>2. 특정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에 대한 절차요건 <이하 생략></p> <p>(1) 재화중량이 20,000톤 이상인 검사강화제도(ESP) 부호를 갖는 선박에 대하여 제3차 정기 검사부터 시행하는 모든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의 선체검사사항인 이 요건이 적용되는 선체 구조와 배관장치의 검사는 최소한 2명의 정검사원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재화중량이 100,000톤 이상인 산적화물선(이중선체 산적화물선 제외)인 경우 선령 10년과 15년 사이에 시행하는 중간검사의 선체사항인 이 요건이 적용되는 선체구조와 배관장치의 검사는 최소한 2명의 정검사원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7)</p> <p>(2) (1)호는 최소한 2명의 정검사원이 <u>요구되는 검사</u>를 수행하기 위해 동시에 본선에 입회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동선급선에 대한 2명의 정검사원 요건은 기국의 관련법규에 적합한 경우 각 선급으로부터 1명의 검사원이 입회하는 것으로 충족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적용</p> <p>1. <현행과 동일></p> <p>2. 특정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에 대한 절차요건 <이하 생략></p> <p>(1) 재화중량이 20,000톤 이상인 검사강화제도(ESP) 부호를 갖는 선박에 대하여 제3차 정기검사부터 시행하는 모든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의 선체검사사항인 이 요건이 적용되는 선체구조와 배관장치의 검사는 최소한 2명의 정검사원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재화중량이 100,000톤 이상인 산적화물선(이중선체 산적화물선 제외)인 경우 선령 10년과 15년 사이에 시행하는 중간검사의 선체사항인 이 요건이 적용되는 선체구조와 배관장치의 검사는 최소한 2명의 정검사원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7)</p> <p>(2) (1)호는 최소한 2명의 정검사원이 <u>요구되는 검사(항해 중 검사(voyage survey)에도 적용됨)</u>를 수행하기 위해 동시에 본선에 입회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동선급선에 대한 2명의 정검사원 요건은 기국의 관련법규에 적합한 경우 각 선급으로부터 1명의 검사원이 입회하는 것으로 충족할 수 있다. (2020)</p> <p><이하 현행과 동일></p> |

2020.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for CoC(지적사항)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8 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p> <p>901. 선급정지 및 회복</p> <p>1. ~ 5. <생략></p> <p>6. 선박소유자 또는 우리 선급의 통제한계를 정당하게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기한이 지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항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양하항까지의 직항을 선급유지상태로 허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합의된 항구까지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지침 참조】</p> <p>(1) 선박기록의 검토</p> <p>(2) 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도착항에서 지정된 검사 및/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 그리고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에 대한 검사</p> <p><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용어의 정의</p> <p>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16. <생략></p> <p>17.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prompt and thorough repair)라 함은 당해 검사 시 완료하는 영구수리로서, 검사원이 만족하고 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u>선급유지조건 또는 지적사항</u>도 남기지 않는 수리를 말한다.</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8 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p> <p>901. 선급정지 및 회복</p> <p>1. ~ 5. <현행과 동일></p> <p>6. 선박소유자 또는 우리 선급의 통제한계를 정당하게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기한이 지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항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양하항까지의 직항을 선급유지상태로 허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합의된 항구까지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지침 참조】</p> <p>(1) 선박기록의 검토</p> <p>(2) 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도착항에서 지정된 검사 및/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 그리고 <u>지적사항</u>에 대한 검사 (2020)</p> <p><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용어의 정의</p> <p>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16. <현행과 동일></p> <p>17.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prompt and thorough repair)라 함은 당해 검사 시 완료하는 영구수리로서, 검사원이 만족하고 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u>지적사항</u>도 남기지 않는 수리를 말한다. (2020)</p> <p><이하 현행과 동일></p> |

| 현행 | 개정 |
|---|--|
| <p>107. 수리</p> <p>1.~4. <생략></p> <p>5. 2항에 명시된 선체구조에서 발견된 손상이 격리된 것이고 선체구조의 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부적인 것인 경우(예를 들면, 크로스데크스트립 내의 작은 구멍), 검사원은 주위구조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절차요건(PR) No. 35 (Procedure for Imposing and Clearing <u>Recommendation/Condition of Class</u>)에 따라 풍우밀 또는 수밀보전성을 다시 확보하기에 적합한 임시수리를 하고 이후 영구수리를 완료하고 선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여 이와 관련된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을 지정할 수 있다.</p> <p><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401. 검사시기</p> <p>1. 첫 번째 정기검사는 최초 등록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라 함은 입거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자재, 장비 또는 예비품이 없는 경우 또는 악천후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p> <p>(1) 연차검사에 준하는 검사</p> <p>(2)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에 대한 재확인</p> <p>(3) 시행 가능한 범위까지 정기검사의 진행</p> <p>(4) 입거검사 지정일이 선급검사연장의 마지막 일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승인된 수중검사사업자에 의한 수선하부 선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입거검사의 연장이 전회 입거검사 완료일로부터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수면하부에 대한 미결된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이 선박에 없는 조건으로 승인된 수중업자에 의한 수선하부 선체에 대한 검사는 면제될 수 있다.</p> <p>이 경우 차기 정기검사의 지정일은 원래 지정된 정기검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지정한다.</p> <p><이하 생략></p> | <p>107. 수리</p> <p>1.~4. <현행과 동일></p> <p>5. 2항에 명시된 선체구조에서 발견된 손상이 격리된 것이고 선체구조의 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부적인 것인 경우(예를 들면, 크로스데크스트립 내의 작은 구멍), 검사원은 주위구조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절차요건(PR) No. 35 (Procedure for Imposing and Clearing <u>Condition of Class</u>)에 따라 풍우밀 또는 수밀보전성을 다시 확보하기에 적합한 임시수리를 하고 이후 영구수리를 완료하고 선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여 이와 관련된 <u>지적사항</u>을 지정할 수 있다. (2020)</p> <p><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401. 검사시기</p> <p>1. 첫 번째 정기검사는 최초 등록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라 함은 입거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자재, 장비 또는 예비품이 없는 경우 또는 악천후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p> <p>(1) 연차검사에 준하는 검사</p> <p>(2) <u>지적사항</u>에 대한 재확인 (2020)</p> <p>(3) 시행 가능한 범위까지 정기검사의 진행</p> <p>(4) 입거검사 지정일이 선급검사연장의 마지막 일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승인된 수중검사사업자에 의한 수선하부 선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입거검사의 연장이 전회 입거검사 완료일로부터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수면하부에 대한 미결된 <u>지적사항</u>이 선박에 없는 조건으로 승인된 수중업자에 의한 수선하부 선체에 대한 검사는 면제될 수 있다. (2020)</p> <p>이 경우 차기 정기검사의 지정일은 원래 지정된 정기검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지정한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적용</p> <p>1. <생략></p> <p>2. 특정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에 대한 절차요건</p> <p>이 요건의 목적은 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이 요건은 화물지역 내에 있는 화물창/탱크, 펌프실, 코퍼덱, 파이프터널 및 보이드스페이스와 모든 평형수탱크에 대한 선체구조 및 배관장치에 대한 검사에 적용한다. 산적화물선의 경우, 화물지역 내에 있는 임의로 선정된 연료유탱크는 3장 2절 산적화물선과 3장 6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에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서 검사되어야 한다. 아래에 명시된 선박크기 및 검사범위를 고려하여, 1명 이상의 검사원이 요구되는 구역, 화물창 또는 탱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지적된 수리에 대한 검사 및 선급유지조건/지적사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2017)</p> <p>(1) ~ (2) <생략></p> <p>(3) 각 입회검사원이 요구되는 검사의 모든 검사항목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서로 협의하여 요건이 적용되는 검사 부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공동으로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의 범위는 신환, 수리 및 기타 지적사항이나 선급유지조건과 관련하여 검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간에 충분히 합의되어야 한다. 각 검사원은 검사보고서에 공동서명을 하거나 동등한 방식으로 그들이 해당검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2017)</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적용</p> <p>1. <현행과 동일></p> <p>2. 특정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에 대한 절차요건</p> <p>이 요건의 목적은 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이 요건은 화물지역 내에 있는 화물창/탱크, 펌프실, 코퍼덱, 파이프터널 및 보이드스페이스와 모든 평형수탱크에 대한 선체구조 및 배관장치에 대한 검사에 적용한다. 산적화물선의 경우, 화물지역 내에 있는 임의로 선정된 연료유탱크는 3장 2절 산적화물선과 3장 6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에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서 검사되어야 한다. 아래에 명시된 선박크기 및 검사범위를 고려하여, 1명 이상의 검사원이 요구되는 구역, 화물창 또는 탱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지적된 수리에 대한 검사 및 지적사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2020)</p> <p>(1) ~ (2) <현행과 동일></p> <p>(3) 각 입회검사원이 요구되는 검사의 모든 검사항목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서로 협의하여 요건이 적용되는 검사 부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공동으로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의 범위는 신환, 수리 및 기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검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간에 충분히 합의되어야 한다. 각 검사원은 검사보고서에 공동서명을 하거나 동등한 방식으로 그들이 해당검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2020)</p> <p><이하 현행과 동일></p> |

2020.01.01일자 시행사항

(건조계약일 또는 고조파필터 개조 후의 검사신청일 기준)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연차검사</p> <p>201. ~ 202. <생략></p> <p>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p> <p>1. - 26. <생략></p> <p>27. 선내 배전시스템에 고조파필터가 포함될 경우, 주모선에 가해지는 고조파 왜곡 수준에 대한 계측기록을 확인한다. 다만, 펌프용 전동기와 같이 단일 용도의 주파수 드라이브에 설치되는 고조파필터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17)</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연차검사</p> <p>201. ~ 202. <현행과 동일></p> <p>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p> <p>1. - 26. <현행과 동일></p> <p>27. 선내 배전시스템의 주모선에 고조파필터가 설치되는 선박의 경우, 주모선에 가해지는 고조파 왜곡 수준에 대한 계측기록을 확인한다. 다만, 펌프용 전동기와 같이 단일 용도의 주파수 드라이브에 설치되는 고조파필터는 제외한다. (2020) 【지침 참조】</p> <p><이하 현행과 동일></p>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

(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2019.12



(사)한국선급

2020.01.01일자 시행사항

(1) 검사신청일 기준

- IACS UR Z1(Rev.7 May 2019) 개정사항 반영
- 내부고객(품질감사팀, 등)의 개정요청서 반영
- 기타 규칙적용시 발견된 불합리한 요건에 대한 개정
- 내부고객(등록선업무팀)의 개정요청서 반영
 - 기관장치 계속검사증에서 보기가 기관장치의 점검 대상으로 인정되도록 개정

(2) 검사신청일 기준 - for CoC

- IACS PR1A(Rev.7 May 2019), PR1B(Rev. 4 May 2019) 개정사항 반영 등

(3) 건조계약일 기준

- 2019년 7편 개정사항 반영

(1) 2020.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우리 선급의 규칙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p> <p>104. 동등효력 [규칙 참조]</p> <p>규칙 104.에서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기준(ISO, KS, ASME, JIS 등)에 적합한 경우, (2)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에 따라 승인된 경우, 또는 (3)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검증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여기서 검증된 사용실적이라 함은 충분한 기간 동안 손상 없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한 사용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p>〈새롭게 추가〉</p> <p>105. 신기술 [규칙 참조]</p> <p>규칙 105.에서 실험, 계산 또는 기타 우리 선급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우리 선급의 규칙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p> <p>104. 동등효력 [규칙 참조]</p> <p>규칙 104.에서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기준(ISO, KS, ASME, JIS 등)에 적합한 경우, (2)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에 따라 승인된 경우, 또는 (3)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검증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여기서 검증된 사용실적이라 함은 충분한 기간 동안 손상 없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한 사용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4) 국제선급 연합회(IACS)의 품질시스템 인증체계(QSCS)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서 이미 승인한 실적선의 동형선인 경우 (2020) <p>〈이하 현행과 동일〉</p> |

| 현 행 | 개 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연차검사</p> <p>2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1. ~ 2. <생략></p> <p>3. 규칙 202.의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을 검사하여야 한다.</p> <p> 【규칙 참조】 (2017)</p> <p> (1) ~ (13)</p> <p> (14) 적합한 경우 전기설비 및 전선, 통풍, 보호복 및 휴대장비의 준비상태에 대한 점검과 급수, 발지배출 및 물분부장치의 시험을 포함하여 위험물 운송을 위한 특별배치를 검사한다. (2017)</p> <p> <새롭게 추가></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연차검사</p> <p>2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1. ~ 2. <현행과 동일></p> <p>3. 규칙 202.의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을 검사하여야 한다.</p> <p> 【규칙 참조】 (2017)</p> <p> (1) ~ (13)</p> <p> (14) 적합한 경우 전기설비 및 전선, 통풍, 보호복 및 휴대장비의 준비상태에 대한 점검과 급수, 발지배출 및 물분부장치의 시험을 포함하여 위험물 운송을 위한 특별배치를 검사한다. (2017)</p> <p> (15) <u>노출갑판 상부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경우, 물분무 창(water mist lance)을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이동식 물모니터, 모든 필요한 호스, 장치 및 요구되는 고정 장구를 검사한다. (2020)</u></p> <p> (16) <u>압축 수소 또는 천연가스를 자주용 연료탱크에 보유한 차량을 화물로서 운송하는 차량운반선에 대하여 가스연료의 탐지에 적합한 휴대용 가스탐지기를 점검하고 시험한다. (2020)</u></p> <p><이하 현행과 동일></p> |

| 현 행 |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및 기재요령 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 |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및 기재요령 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선종</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기사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4. Oil/Chemical Tanker (Double Hull)⁽²⁻²⁾ 〈새롭게 추가〉 'ESP'⁽²⁻¹⁾⁽⁷⁻¹⁾ (FAC)⁽¹⁾ (FAO)⁽¹⁾ (FBC)⁽¹⁾ (CSR)⁽²⁻⁴⁾</td> <td>선종 1란 및 3란⁽⁹⁾의 특기사항</td> <td>⁽⁹⁾ : 2.2의 기재요령 참조</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body> </table> | 선종 | 특기사항 | 비고 | 〈생략〉 | | | 4. Oil/Chemical Tanker (Double Hull) ⁽²⁻²⁾ 〈새롭게 추가〉 'ESP' ⁽²⁻¹⁾⁽⁷⁻¹⁾ (FAC) ⁽¹⁾ (FAO) ⁽¹⁾ (FBC) ⁽¹⁾ (CSR) ⁽²⁻⁴⁾ | 선종 1란 및 3란 ⁽⁹⁾ 의 특기사항 | ⁽⁹⁾ : 2.2의 기재요령 참조 | 〈생략〉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선종</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기사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td> </tr> <tr> <td>4. Oil/Chemical Tanker <i>(2020)</i> (Double Hull)⁽²⁻²⁾ <u>(Double Hull)(EXP)</u>⁽²⁻³⁾ 'ESP'⁽²⁻¹⁾⁽⁷⁻¹⁾ (FAC)⁽¹⁾ (FAO)⁽¹⁾ (FBC)⁽¹⁾ (CSR)⁽²⁻⁴⁾</td> <td>선종 1란 및 3란⁽⁹⁾의 특기사항</td> <td>⁽⁹⁾ : 2.2의 기재요령 참조</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td> </tr> </tbody> </table> | 선종 | 특기사항 | 비고 | 〈현행과 동일〉 | | | 4. Oil/Chemical Tanker <i>(2020)</i> (Double Hull) ⁽²⁻²⁾ <u>(Double Hull)(EXP)</u> ⁽²⁻³⁾ 'ESP' ⁽²⁻¹⁾⁽⁷⁻¹⁾ (FAC) ⁽¹⁾ (FAO) ⁽¹⁾ (FBC) ⁽¹⁾ (CSR) ⁽²⁻⁴⁾ | 선종 1란 및 3란 ⁽⁹⁾ 의 특기사항 | ⁽⁹⁾ : 2.2의 기재요령 참조 | 〈현행과 동일〉 | | |
| 선종 | 특기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Oil/Chemical Tanker (Double Hull) ⁽²⁻²⁾ 〈새롭게 추가〉 'ESP' ⁽²⁻¹⁾⁽⁷⁻¹⁾ (FAC) ⁽¹⁾ (FAO) ⁽¹⁾ (FBC) ⁽¹⁾ (CSR) ⁽²⁻⁴⁾ | 선종 1란 및 3란 ⁽⁹⁾ 의 특기사항 | ⁽⁹⁾ : 2.2의 기재요령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종 | 특기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Oil/Chemical Tanker <i>(2020)</i> (Double Hull) ⁽²⁻²⁾ <u>(Double Hull)(EXP)</u> ⁽²⁻³⁾ 'ESP' ⁽²⁻¹⁾⁽⁷⁻¹⁾ (FAC) ⁽¹⁾ (FAO) ⁽¹⁾ (FBC) ⁽¹⁾ (CSR) ⁽²⁻⁴⁾ | 선종 1란 및 3란 ⁽⁹⁾ 의 특기사항 | ⁽⁹⁾ : 2.2의 기재요령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비고) ⁽³⁵⁾ : 다음의 추가특기사항은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부기한다. 추가특기사항은 선체사항인지 기관사항인지에 관계없이 선체부호 아래 특기사항 다음의 위치에 부기한다.

| 추가특기사항 | 적용규정 |
|--------|--|
| | 〈생략〉 |
| WS | 규칙 4편 6장 201.의 규정에 따라 화물창이 선측내장 판으로 보호된 선박 |
| | 〈이하 생략〉 |

개 정

(비고) ⁽³⁵⁾ : 다음의 추가특기사항은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부기한다. 추가특기사항은 선체사항인지 기관사항인지에 관계없이 선체부호 아래 특기사항 다음의 위치에 부기한다.

| 추가특기사항 | 적용규정 |
|--------|-------------|
| | 〈현행과 동일〉 |
| - | - |
| | 〈이하 현행과 동일〉 |

| 현행 | 개정 |
|--|--|
| <p>2. 선급부호 기재요령 일반적인 선급부호체계는 다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선체></p> <p><기관></p> <p>(1) 규칙 1장 201.의 (1)에서 규정하는 등록부호 (2) 규칙 1장 201.의 (2)에서 규정하는 선체부호 (3) 규칙 1장 201.의 (4)에서 규정하는 선체 및 기관의장부호 (4) 규칙 1장 201.의 (6) 및 전 1.1에서 규정하는 선종부호 (5) 규칙 1장 201.의 (7) 및 전 1.1에서 규정하는 특기사항 (6) 규칙 1장 201.의 (7) 및 전 1.1의 비고(32)에서 규정하는 추가특기사항 (7) 규칙 1장 201.의 (5) 및 전 1.2에서 규정하는 추가설비부호(선체 및 기관사항) (8) 규칙 1장 201.의 (3)에서 규정하는 기관부호</p> <p><이하 생략></p> | <p>2. 선급부호-기재요령 - 전체 삭제 후 선급부호안 내서로 이동</p> |

현 행

개 정

3.0 특기사항

Example :

한정된 항로 및 한정된 시기에만 항해할 목적으로 감소된 scantling을 적용한 경우

✕ KRS 0 - Barge
Between Korea and Sakhalin service during May and June

3.0 특기사항

- 전체 삭제 후 선급부호 안내서로 이동

※ 우리 선급의 대빙등급과 Finnish-Swedish Ice Class Rules 2010 및 Arctic Shipping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의 대빙등급 비교

| 우리 선급의 대빙등급 | Finnish-Swedish Ice Class Rules 2010의 대빙등급 |
|---|--|
| IA Super | IA Super |
| IA | IA |
| IB | IB |
| IC | IC |
| * | II |
| (비고) *) 우리 선급의 ID등급은 선수부 보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Finnish-Swedish Ice Class Rules의 II 등급과는 서로 상이함. | |

| 우리 선급의 대빙등급 | The Arctic Shipping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의 대빙등급 |
|-------------|--|
| IA Super | Type A |
| IA | Type B |
| IB | Type C |
| IC | Type D |
| ID | Type D |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부록 1-12 제조중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 참조 | 건조기능 | 선급 검사요건 | 선급 검사방법 | IACS 문서* | 정부대행 요건 및 관련 문서 |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 특정활동 |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
|---------------|---|-------------------------|---------|----------|-----------------|---|------------------------|---|-------------------|
| 2.5 (2018) | 정렬/조립 또는 용접배치에 취약한 지역 ¹⁾ , 정의된 경우,에 대한 적합성 |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렬/조립/간격의 점검 | 입회 및 검토 | Rec 47 | |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승인된 도면 또는 기준, 조선소검사기록 | 해당되는 경우, 취약지역에 대한 승인도면 | 최신 승인도에 관련된 정보가 작업장에서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검증 | |
| | | | | | | | | 모든 작업장에서 만족한 조립 및 정렬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에 대한 검증 | |
| | | | | | | | | 조립작업 중에 끝단가공이 없어진 경우, 다시 가공되는지에 대한 검증 | |
| | | | | | | | | 큰 간격 및 정렬의 차이를 보상하기위한 수정절차가 정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검증 | |

(비고)

1)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a) 선체건조감시 부기부호 “Sea Trust(HCM)”를 부여받은 선박의 경우 승인된 선체건조감시계획서 또는,
- b) 해당되는 경우, 승인된 선체구조접근 지침서 또는,
- c) 선종별 대표적인 취약부위(부록 1-12-4) 또는,
- d) 다음의 인쇄물을 참고한다.

- 유조선 : Guidance Manual for Tanker Structures by TSCF나 Double Hull Oil Tankers - Guidelines for Surveys, Assessment and Repair of Hull Structures By IACS(Rec 96) 또는 최신 IMO 총회 결의 A1047(27)(2011 ESP Code)
- 산적화물선 : Bulk Carriers Guidelines for Surveys, Assessment and Repair of Hull Structure by IACS(Rec 76) 또는 최신 IMO 총회 결의 A1047(27)(2011 ESP Code)
- 일반건화물선 : General Dry Cargo Ships - Guidelines for Surveys, Assessment and Repair of Hull Structure By IACS(Rec. 55)
- 컨테이너선 : Container Ship - Guidelines for Surveys, Assessment and Repair of Hull Structure By IACS(Rec. 84) 등

개 정 사 항

부록 1-12 제조중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

|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 | | | | | | | | |
|----------------|---|--------------|---------|----------|-----------------|---|------------------------|---|-------------------|
| 참조 | 건조기능 | 선급 검사요건 | 선급 검사방법 | IACS 문서* | 정부대행 요건 및 관련 문서 |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 특정활동 |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
| 2.5 | 정렬/조립 또는 용접배치에 취약한 지역 ¹⁾ , 정의된 경우,에 대한 적합성 | 승인된 도면에 따라 | 입회 및 검토 | Rec 47 | |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승인된 도면 또는 기준, 조선소검사기록 | 해당되는 경우, 취약지역에 대한 승인도면 | 최신 승인도에 관련된 정보가 작업장에서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검증 | |
| | | 정렬/조립/간격의 점검 | | | | | | 모든 작업장에서 만족한 조립 및 정렬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에 대한 검증 | |
| | | <이하 현행과 동일> | | | | | | | |

(비고)

1)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a) 선체건조감시 부기부호 “Sea Trust(HCM)”를 부여받은 선박의 경우 승인된 선체건조감시계획서 또는,

b) 해당되는 경우, 승인된 선체구조접근 지침서 또는,

c) 기타 참고 자료 (2020)

i) 선종별 대표적인 취약부위(부록 1-12-4) 또는,

ii) 다음의 인쇄물을 참고한다.

- 유조선 : Guidance Manual for Tanker Structures by TSCF나 Double Hull Oil Tankers - Guidelines for Surveys, Assessment and Repair of Hull Structures By IACS(Rec 96) 또는 최신 IMO 총회 결의 A1047(27)(2011 ESP Code)

- 산적화물선 : Bulk Carriers Guidelines for Surveys, Assessment and Repair of Hull Structure by IACS(Rec 76) 또는 최신 IMO 총회 결의 A1047(27)(2011 ESP Code)

- 일반건화물선 : General Dry Cargo Ships - Guidelines for Surveys, Assessment and Repair of Hull Structure By IACS(Rec. 55)

- 컨테이너선 : Container Ship - Guidelines for Surveys, Assessment and Repair of Hull Structure By IACS(Rec. 84) 등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기관장치의 계속검사</p> <p>902. 검사사항 【규칙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칙 902.의 1항 및 2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7을 말한다. 2. 규칙 902.의 3항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침 1장 801.의 6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규칙 902.의 4항에서 여객선의 CMS 적용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부록 1-7의 표 2</u>를 적용함에 있어 본선 기관장의 점검은 인정되지 않으며 검사원의 입회 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9)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기관장치의 계속검사</p> <p>902. 검사사항 【규칙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칙 902.의 1항 및 2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7을 말한다. 2. 규칙 902.의 3항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침 1장 801.의 6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규칙 902.의 4항에서 여객선의 CMS 적용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부록 1-7의 표 2</u>를 적용함에 있어 주 및 보조기관에 대하여 본선 기관장의 점검은 인정되지 않으며 검사원의 입회 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20)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동일〉</p> |

(2) 2020.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CoC(지적사항)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3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p> <p>401.~402. <생략></p> <p>403.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이전(TOC(Transfer of Classification)) (2017) [규칙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1. ~ 3. <생략></p> <p>4. 등록검사</p> <p>등록검사는, 선급유지를 위한 정기적 검사로 시행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급유지를 위한 정기적 검사로서 시행할 수 있다. 선급유지를 위한 특정 정기적 검사 시까지 적합하여야 하는 지적사항 및/또는 선급유지조건은 등록검사를 선급유지를 위한 특정 정기적 검사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이상, 또는 지적사항 및/또는 선급유지조건이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는 이상 등록검사 시에 시행/적합할 필요는 없다.</p> <p>(1) 선급이전으로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p> <p>(가) <생략></p> <p>(나) 선령이 15년 미만인 선박의 경우 (가)에 규정된 모든 해당검사를 만족하게 완료하기 전까지, 그리고 기한이 지난 모든 검사 및 기한이 지난 모든 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을 선박소유자에게 탈급선급이 명시한 바대로 완료 및 시정하기 전까지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하는 다른 문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령이 15년 이상인 선박의 경우 (가)에 규정된 모든 해당검사를 만족하게 완료하기 전까지, 그리고 기한이 지난 모든 검사 및 기한이 지난 모든 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을 탈급선급이 완료 및 시정하기 전까지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하는 다른 문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3절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제조후등록검사</p> <p>401.~402. <현행과 동일></p> <p>403. 타선급선의 등록검사 또는 선급이전(TOC(Transfer of Classification)) (2017) [규칙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p> <p>1. ~ 3. <현행과 동일></p> <p>4. 등록검사</p> <p>등록검사는, 선급유지를 위한 정기적 검사로 시행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급유지를 위한 정기적 검사로서 시행할 수 있다. 선급유지를 위한 특정 정기적 검사 시까지 적합하여야 하는 지적사항은 등록검사를 선급유지를 위한 특정 정기적 검사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이상, 또는 지적사항이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는 이상 등록검사 시에 시행/적합할 필요는 없다. (2020)</p> <p>(1) 선급이전으로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선령이 15년 미만인 선박의 경우 (가)에 규정된 모든 해당검사를 만족하게 완료하기 전까지, 그리고 기한이 지난 모든 검사 및 기한이 지난 모든 지적사항을 선박소유자에게 탈급선급이 명시한 바대로 완료 및 시정하기 전까지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하는 다른 문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령이 15년 이상인 선박의 경우 (가)에 규정된 모든 해당검사를 만족하게 완료하기 전까지, 그리고 기한이 지난 모든 검사 및 기한이 지난 모든 지적사항을 탈급선급이 완료 및 시정하기 전까지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하는 다른 문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0)</p> <p><이하 현행과 동일></p> |

| 현행 | 개정 |
|--|---|
| <p>(다) 단기선급증서 및 선급증서의 유효성은 탈급선급이 지정한 날짜 및 명시한 바대로 완료하여야 하는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은 그 검사지정일과 함께 다음에 명시되어야 한다.</p> <p>(a) 단기선급증서 및/또는 선급검사보고서 및</p> <p>(b) 선급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검사현황</p> <p>(라) 탈급선급으로부터 추가의 미결된 검사 또는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 (나) 및 (다)에 따라야 한다. 만일 이러한 추가의 정보가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 후에 접수되는 경우 기한이 지난 모든 검사 또는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에 대하여 첫 번째 도착항에서 다음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p> <p>(a) ~ (b) <생략></p> <p>(2) 중복선급선으로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p> <p>(가) <생략></p> <p>(나) 첫 번째 선급에 의하여 제공된 선급현황의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을 고려하여 (1) (가)의 요건에 따라서 등록검사를 시행한다.</p> <p>(3)~(4) <생략></p> <p>5. 우리 선급의 중복선급선으로서 상대선급에서 탈급하는 경우</p> <p>(1) 선령이 15년 미만인 선박의 경우 상대선급의 기한이 지난 모든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에 대하여 검사가 가능한 첫 번째 도착항에서 완료하고 상대선급의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에 대하여는 상대선급의 지정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p> <p>선령이 15년 이상인 선박의 경우 상대선급의 기한이 지난 모든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은 상대선급에 의하여 완료되어야 하고 상대선급의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에 대하여는 상대선급의 지정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p> | <p>(다) 단기선급증서 및 선급증서의 유효성은 탈급선급이 지정한 날짜 및 명시한 바대로 완료하여야 하는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u>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u>은 그 검사지정일과 함께 다음에 명시되어야 한다. <u>(2020)</u></p> <p>(a) 단기선급증서 및/또는 선급검사보고서 및</p> <p>(b) 선급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검사현황</p> <p>(라) 탈급선급으로부터 추가의 미결된 검사 또는 <u>지적사항</u>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 (나) 및 (다)에 따라야 한다. 만일 이러한 추가의 정보가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 후에 접수되는 경우 기한이 지난 모든 검사 또는 <u>지적사항</u>에 대하여 첫 번째 도착항에서 다음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u>(2020)</u></p> <p>(a) ~ (b) <현행과 동일></p> <p>(2) 중복선급선으로 우리 선급에 등록하는 경우</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첫 번째 선급에 의하여 제공된 선급현황의 <u>지적사항</u>을 고려하여 (1) (가)의 요건에 따라서 등록검사를 시행한다. <u>(2020)</u></p> <p>(3)~(4) <현행과 동일></p> <p>5. 우리 선급의 중복선급선으로서 상대선급에서 탈급하는 경우</p> <p>(1) 선령이 15년 미만인 선박의 경우 상대선급의 기한이 지난 모든 <u>지적사항</u>에 대하여 검사가 가능한 첫 번째 도착항에서 완료하고 상대선급의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u>에 대하여는 상대선급의 지정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p> <p>선령이 15년 이상인 선박의 경우 상대선급의 기한이 지난 모든 <u>지적사항</u>은 상대선급에 의하여 완료되어야 하고 상대선급의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u>에 대하여는 상대선급의 지정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u>(2020)</u></p> |

| 현행 | 개정 |
|--|--|
| <p>(2) 선급증서의 유효성은 상대선급이 지정한 날짜 및 명시한 바대로 완료하여야 하는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은 그 검사지정일과 함께 다음에 명시되어야 한다.</p> <p>(a) ~ (b) <생략></p> <p>(3) 상대선급으로부터 추가의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 (1) 및 (2)에 따라야 한다. 만일 이러한 추가의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이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 후 또는 선급증서에 이서한 후에 접수되는 경우 기한이 지난 모든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에 대하여 검사가 가능한 첫 번째 도착항에서 선박의 선령에 따른 해당선급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p> <p>(4) 검사를 시행하는 첫 번째 항구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상대선급이 기한이 지난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항구까지의 직항을 허용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 <p>(2) 선급증서의 유효성은 상대선급이 지정한 날짜 및 명시한 바대로 완료하여야 하는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u>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미결된 모든 <u>지적사항</u>은 그 검사지정일과 함께 다음에 명시되어야 한다. <i>(2020)</i></p> <p>(a) ~ (b) <현행과 동일></p> <p>(3) 상대선급으로부터 추가의 <u>지적사항</u>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 (1) 및 (2)에 따라야 한다. 만일 이러한 추가의 <u>지적사항</u>이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 후 또는 선급증서에 이서한 후에 접수되는 경우 기한이 지난 모든 <u>지적사항</u>에 대하여 검사가 가능한 첫 번째 도착항에서 선박의 선령에 따른 해당선급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i>(2020)</i></p> <p>(4) 검사를 시행하는 첫 번째 항구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상대선급이 기한이 지난 <u>지적사항</u>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항구까지의 직항을 허용할 수 있다. <i>(2020)</i></p> <p><이하 현행과 동일></p> |

| 현행 | 개정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3 선박소유자 선체 점검 및 정비 프로그램</p> <p>1. <생략> 2. 요건 (1) 선체에 관련된 미결된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2) 선급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는 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선체구조 및 방식조치에 관련된 미결된 <u>지적사항/선급유지조건</u>이 없이 최신화되어야 한다.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3 선박소유자 선체 점검 및 정비 프로그램</p> <p>1. <현행과 동일> 2. 요건 (1) 선체에 관련된 미결된 <u>지적사항</u>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u>(2020)</u> (2) 선급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는 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선체구조 및 방식조치에 관련된 미결된 <u>지적사항</u>이 없이 최신화되어야 한다. <u>(2020)</u> <현행과 동일></p> |

(3) 2020.01.01.일자 시행사항
(건조계약일 기준)

| 현행 | 개정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3 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401. ~ 402. <생략></p> <p>403. 검사사항</p> <p>1. ~ 8. <생략></p> <p>9. <u>규칙 403.의 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강도 극후강판을 사용한 컨테이너선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지침 부록 7-8의 3항에 적합해야 하는 선박인 경우, 제2차 정기검사 및 이후 매 짝수 정기검사(즉, 제4차, 제6차 정기검사 등)시에 지침 부록 7-8의 3항 및 표 1에 따라서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규칙 참조】</u></p> <p><이하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3 절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401. ~ 402. <현행과 동일></p> <p>403. 검사사항</p> <p>1. ~ 8. <현행과 동일></p> <p>9. <u>규칙 403.의 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강도 극후강판을 사용한 컨테이너선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지침 부록 7-8의 3항에 적합해야 하는 선박인 경우, 제2차 정기검사 및 이후 매 짝수 정기검사(즉, 제4차, 제6차 정기검사 등)시에 지침 부록 7-8의 3항 및 표 1에 따라서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u> <u>(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계약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u> <u>(2020)</u></p> <p><이하 현행과 동일></p> |